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31)

관세청 훈령	제760호(1999. 4. 9)
관세청 훈령	제804호(2000. 2.17)
관세청 훈령	제819호(2000. 7.10)
관세청 훈령	제832호(2000.12.29)
관세청 훈령	제1014호(2005. 6.10)
관세청 훈령	제1219호(2009. 3.10)
관세청 훈령	제1257호(2009. 8.20)
관세청 훈령	제1322호(2010. 5. 1)
관세청 훈령	제1524호(2013. 4.25)
관세청 훈령	제1755호(2015. 7.21)
관세청 훈령	제1877호(2017. 8.24)
관세청 훈령	제2029호(2020.12.21.)
관세청 훈령	제0000호(2023.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한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에 대한 기준, 방법, 절차, 범위, 제재 및 검사결과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6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제3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검사요원”이란 외국환거래 검사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검사대상자”란 영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 나. 수출입물품거래의 수출입신고인, 납세의무자, 수출자, 제조자, 수출입대행자, 물품매도확인서 발행자, 중개인, 수출입물품의 운송인, 운송주선업자, 수출입물품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도매상 및 소매상 등 국내외 유통에 관련되는 자
 - 다. 용역거래의 수입자, 수출자, 소개자, 용역의 국내 사용자 및 용역을 이용한 물품제조자
 - 라. 자본거래의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임대인, 임차인, 권리 취득자, 권리 양도자 및 자본거래에 따른 채권의 발생·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거래와 관련되는 자
 - 마. 그 밖의 외국환거래 관계인
4. “기업심사”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종합심사와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기업심사를 말한다.
5. “서면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제출 받아, 검사요원이 소속된 세관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실지검사”란 검사요원이 이 훈령에서 정하는 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동검사”란 영 제35조제10항, 같은 조 제12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검사를 말한다.

제3조(검사의 범위) 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범위는 검사대상자의 업무로 한다.

제4조(검사의 관할) ① 이 훈령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대상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부세관장은 산하세관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세관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검사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검사사안의 중요성, 검사의 신속성, 세관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직접 검사하거나 검사의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심사를 하는 과정 중 검사를 하는 경우의 관할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제5조(조력을 받을 권리) ① 검사대상자가 검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 또는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관세사의 조력 범위를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범위로 한정한다.

② 검사요원은 제1항에 따라 조력을 하는 자가 검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는 때에는 해당 조력자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기업심사를 통한 검사 절차) 세관장이 기업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제8조부터 제21조까지의 절차를 갈음한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7조(환전영업자에 대한 검사 절차) 검사대상자가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계획의 승인, 검사 실시 방법 및 검사결과 보고 등에 대하여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다만,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검사의 실시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검사장소 및 검사 수행 요원
 2. 검사방법(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중에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및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
 3. 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와 대상 기간
 4.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수립한 검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검사반의 편성)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업체규모 및 외국환거래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검사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검사반장을 지정하여 검사요원을 지휘하게 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산하세관 소속 공무원을 검사요원으로서 검사반에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실시계획의 통보)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에 검사계획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때 제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검사사유
2. 검사방법
3. 검사를 하는 기간(실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지 검사 기간을 포함한다)

4. 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 기간 및 주요 검사 사항

5. 검사공무원의 명단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함께 송부하고, 검사준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 항목 상세 내역

3.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 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사규집, 사업계획서 등 일반자료

나. 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L/C철, 물품매도확약서, 수입관리대장 등 무역관련 자료

다.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매입·매출장, 계정과목 코드집, 그 밖의 전표 및 증명철 등 회계 관련 자료

라. 기술도입계약서, 로얄티 등에 대한 무역외지급인증서사본 등 용역비 지급 관련 자료

마.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자본거래내역서, 품목별 제조원가계산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관련 자료

4. 제11조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검사 당일 검사계획을 통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검사대상자의 연기신청) ①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사회재난 등으로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

2.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3. 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한 있는 기관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검사대상자는 검사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를 검사계획을 통보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검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 연기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2조(실지검사의 장소) ① 실지검사는 검사대상자의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사유가 타당하고 검사장소로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결과를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검사요원의 상시적 출입이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2. 사업장이 협조하여 검사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출입 통제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

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제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별표 3의2, 별표 4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2. 검사대상자가 위반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제출
3. 검사대상자가 세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제14조(검사의 실시) ① 세관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한 검사 계획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 계획을 통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방법 또는 검사 대상 범위를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보한 검사실시계획과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과 이유를 보고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 준비 자료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검사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검사 대상 범위 이외의 사항에서 법규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검사 대상 기간 및 업무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검사 계획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변경 통보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실지 검사 시간) 검사 요원은 검사대상자에 대해 실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제외한 검사대상자의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지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자의 요구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실지검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기간 및 연장) ① 세관장은 검사인원, 검사대상자의 규모 및 검사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0일 이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전체 검사기간으로 정한다. 다만,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검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일 이내로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실지검사 기간을 두 차례 이상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각 차수별로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검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검사대상자가 검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여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9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 연장 통지서를 심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한다.

④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중지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대상자가 검사 중지를 요청한 경우
2. 검사대상자가 검사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여 검사 기간 내에 검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3. 노사분규 등 검사대상자의 사정으로 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검사대상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어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중요 쟁점에 대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요구되어 질의한 경우로 그 회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검사를 중지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중지 사유가 소멸하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검사를 재개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11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재개 통지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체 검사기간은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하고, 제4항에 따라 검사가 중지된 기간과 실지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에 따라 검사요원

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실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일을 전체 검사기간에 산입한다.

⑦ 서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마친 다음날을 검사를 시작한 날로 한다.

제17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등) ① 세관장은 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준비 자료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 질문

3. 검사대상자의 사무실에서 외국환거래 관련 **문서화·전산화된 장부** 및 서류의 열람·확인 검사와 구두 질문

4. 검사 자료의 검토와 확인을 위한 관련자의 세관 출석 요구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

③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각종 자료나 장부를 운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검사대상자의 차량을 이용하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④ 검사요원은 검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세관장은 검사요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검사 중지,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범칙조사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8조(검사자료의 보관)** 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라 제출받은 검사자료와 물품(이하 “검사자료등”이라 한다)이 검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보관 동의서를 받은 후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세관 관서에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물품 보관 목록과 별지 제1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 자료·물품 보관증을 검사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보관한 검사자료등을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자가 검사자료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지장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즉시 검사대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자료등을 반환할 때에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반환 확인서와 별지 제16호서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반환물품 목록을 받아야 한다.
- ⑤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자료 중 검사대상자와의 쟁점 사항 등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원본과 같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 제19조(검사 대상자의 확대)** ① 검사반장은 검사 중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이 검사대상자 이외의 다른 검사대상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검사대상자에 대하여 검사를 확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검사 인력의 부족 등으로 제2항에 따른 확대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검사관할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진행상황의 보고) ① 검사요원은 검사가 종결될 때까지 검사진행 상황 등 모든 활동사항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일일보고서에 기록하고, 검사반장을 경유하여 검사 담당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원격지 출장 등의 사유로 매일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반장이 검사진행상황을 유선으로 보고한 후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 담당과장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주요사항을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세관장은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검사방향 지시 및 관세청장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 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의 소명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범규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시급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검사 결과의 처리

제22조(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세관장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검사결과에서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3조(검사결과 처분)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 세관장은 검사결과 범규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검사종결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검사종류
2. 검사실시기간
3. 검사대상기간
4. 검사대상 외국환거래
5. 검사결과

제4장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제24조(공동검사의 요구) ① 관세청장은 [영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공동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동검사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동검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요구해야 한다.

1. 공동검사가 필요한 이유
2. 공동검사대상자
3. 공동검사 할 대상 기간과 업무 범위
4. 공동검사기간

제25조(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처리) 관세청장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영 제35조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공동검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26조(공동검사의 방법) ① 관세청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반의 편성, 공동검사 기간, 검사할 대상 기간 및 중점검사 분야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검사를 수행할 세관장에게 검사계획의 수립과 검사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10조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세관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검사반에 편성된 금융감독원의 검사직원과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1. 검사대상자가 제11조에 따라 검사연기를 신청한 경우
2. 검사대상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외 장소를 검사 장소로 신청한 경우

제27조(금융감독원장과의 정보교환)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공동검사대상자에 대한 각종 등록 및 신고자료, 업무현황 자료 및 공동검사 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

제28조(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관세청장은 공동검사가 끝난 후 세관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와 필요한 조치 등의 요구 사항을 문서로 송부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별도지침)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014호(2005.06.10.)>

이 세칙은 2005. 6.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219호(2009.03.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세칙의 시행일로부터 「외환자료활용에관한보안관리 지침(관세청 외환47400-110호, 2000.6.26.)」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9년 2월 4일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322호(2010.05.01.)>

이 세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524호(2013.04.25.)>

이 세칙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755호(2015.07.21.)>

이 훈령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1877호(2017.08.24.)>

이 훈령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2029호(2020.12.21.)>

이 훈령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세청 훈령 제0000호(2022.12.00.)>

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 통지**

1. 「외국환거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붙임 1과 같이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하오니, 붙임 2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귀하(귀사)의 외국환거래 적정성을 자율 점검하시고, 붙임 3의 검사준비 목록표의 자료를 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사가 사업상 심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검사를 받기가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라 붙임 5의 서식으로 검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서.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3.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항목 상세 거래내역 양식.
4. 검사준비목록표.
5.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서						
검사 대상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1. 검사 사유						
2. 검사 방법		※ 서면검사, 실지검사 또는 병행 여부 기재				
3. 검사기간 (실지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4. 검사 범위		○ 검사 대상 업무 범위 ○ 검사 대상 업무 기간				
5. 검사 공무원		세관	과	직급	성명	비고
						검사반장
						검사요원
						검사요원
		⋮	⋮	⋮	⋮	⋮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등 의 방 법 (상 계)	1 수출입거래,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를 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6 번으로 이동	
	2 비거주자와의 대외거래로 발생한 채권·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다른 채무·채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을 결제하고 있다. (잔액에 대하여 Debit·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5 번(상호계산제도) 확인 후 6 번으로 이동	
	3 2 항에 따른 상계를 하면서, 외국환은행의장에게 사전 신고 또는 상계 후 1개월내에 사후보고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상계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
	4 2 항에 따른 상계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하여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면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 신고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상계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5 비거주자와의 빈번한 채권·채무 결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일정기간의 거래내역을 계정에 대기 또는 차기후 주기적(회계기간내)으로 결산하여 정산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서로 상계하기 위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상호계산 신고서를 제출 하였다.	※ 상호계산계정의 결산은 회계기간 범위내에서 월단위로 결산주기를 정하여 실시하며, 적어도 1년에 1번 이상 결산해야 합니다.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등 의 방 법 (기 간 초 과 지 급 등)	6 계약건당 미화 5만불 초과하는 수출 거래가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8 번으로 이동		
	7 6 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다. 가.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 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 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10 번 신고여부 확인		
	8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초과하는 수입 거래가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11 번으로 이동			
9 8 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가.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금을 수입 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 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10 번 신고여부 확인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0 7,9 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를 하고 지급, 수령을 하였다.	② 기간초과지급 등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등 의 방 법 (3 자 지 급 등 의 방 법)	11 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 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님에도 거래당사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16 번으로 이동		
	12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 이전 포함) 나.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자금을 관계성이 확인된 중개·대리인에게 지급 다. 단순수입대행거래에서 위탁자인 거주자가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라. 거주자간 결제를 위해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마.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명의로 개설된 에스스로 계좌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바.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사. 거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제3자거래 신고예외 사항 16 번으로 이동 ② 14, 15 번 신고여부 확인		
	13 외화 채무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국내 거주자를 대신하여 거주자의 외화 채무를 대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례] 비거주자와의 외화채무를 국내계좌 (환치기계좌 등)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14, 15 번 신고여부 확인		
14 12 를 제외하고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시 합산금액)을 11, 13 과 같이 지급 하면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 신고하였다.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개월내 사후보고)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	
	② 3가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15 12 를 제외하고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11, 13 과 같이 지급 하면서 한국 은행총재에 사전 신고하였다.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개월내 사후보고)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건 당 위 반 금 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② 3가지급 등의 방법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지 급	16 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와의 거래 결제를 위해 외국환은행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17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급을 하고 있다. 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 나.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 다.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라. 법인의 예산으로 환전한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소속의 해외여행자가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마. 본인명의 신용카드로 지급하거나 미화1만불 이하의 경우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바. 대외 채무 결제,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휴대 반출하여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	① 수령은 신고 예외사항	① 지급 신고 예외사항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등)				18 상기 16 , 17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외국환은행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 등을 하고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였다
			②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신고 위반 : 벌칙(과태료) 대상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자 본 거 래	19 비거주자와 예금·신탁거래, 금전대차거래, 채무보증거래, 대외지급수단·채권·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 발행, 증권취득, 파생상품거래, 부동산 거래, 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거래,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 거래에 따른 자본거래를 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24 번으로 이동		
	20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 등의 금액 (분할하여 지급한 경우 합산한 금액)이 <u>미화 5천불 이내이다.</u> (17.7.17.이전은 2천불)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자본거래 신고 예외사항		
	21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수령)금액이 <u>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u> 이고, 연간 지급(수령)누계금액이 5만불이내인 경우로서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 지급(수령) 하였다. (17.7.17.이전은 2천불 초과 5만불이내)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자본거래 신고 예외사항			
22 20 , 21 의 자본거래를 제외하고 19 의 자본거래를 위해 자본거래 신고(수리) 기관[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하여 신고수리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자본거래 신고위반 : 벌칙(과태료) 처분 ※ 자본거래 거래 신고(신고수리)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자본거래 신고(수리)기관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 건 당 위 반 금 액 10억원 이하 > 1)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 : 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	
23 신고 내용에 변경이 있어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 기관에 자본거래 신고내용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였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② 자본거래 신고위반 : 벌칙(과태료) 처분		2) 기재부장관, 한은총재 신고 대상 : 위반금액 4%와 200만원 중 큰 금액	

* 벌칙 : 건당 위반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단,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과태료)
해 외 직 접 투 자	<p>24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가 있다.</p> <p>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설립중)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이상을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나. 투자비율이 10%미만 이더라도 임원파견,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유지</p> <p>다. 현지법인 등을 설립</p> <p>라. 기 설립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로 대부투자를 하고 있다.</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25 24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장에 사전 신고하고 절차를 진행하였다.</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 건 당 위 반 금 액 10억원 이하 ></p> <p>위반금액 2%와 100만원 중 큰 금액</p>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p>26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 연장, 현지법인의 자회사 또는 손회사(지분 10%이상 출자) 설립 등으로 25의 해외직접투자 내용이 변경되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 신고를 하였다.</p> <p>(다만 기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 및 증액투자는 해외직접투자 신규신청 절차에 준함)</p>	③ 해당사항 없음			
<p>27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 활동을 위해 해외지점을 설치 및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 비영리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국외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다.</p> <p>(해외지점의 영업기금은 해외지사경비 지급신고에 의해 지급,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는 송금신청서에 의해 지급)</p>	③ 해당사항 없음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수 출 입 실 적 및 외 국 환 거 래 내 역	1. 검사대상기간 수출입 및 외환 지급·영수 실적(세관 제공) - 과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업체 제출) - 과영수 또는 미영수 사유(업체 제출)	
	2. 검사대상기간 중계무역 수출입 및 외환 지급·영수 실적(세관 제공) - 과지급 또는 미지급 사유(업체 제출) - 과영수 또는 미영수 사유(업체 제출)	
	3. 해외직접투자 금액(세관 제공) - 투자지역·내용·기간, 신고은행, 투자금액 회수여부 등 해외직접투자 관련 전반적인 내용(업체 제출)	
	4. 기타 검사대상자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업체 자율 점검이 필요한 사항	

○ (작성 자) 소속 : 직책 : 작성자 : (인)

○ (작성일자) 20 . .

[별지 제4호서식]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거래 내역

1. 수출입거래 채권채무 내역

수출입거래 채권채무 내역

거래상대방	거래 계정과목	발생액(외화)	지급액(외화)	잔액(외화)	비고
<예시1>	매입				유상수입
<예시2>	임차료				임차수입
<예시3>	외주용역비				위탁가공
<예시4>	건설중 자산				설비수입

- 대상 : 거래상대방별 연간 발생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작성
(수입거래는 외국인도 수입을 포함)
- 거래내용에 물품과 용역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거래금액에 합산하여 기재

2. 용역거래 채권채무 내역

용역거래 채권채무 내역

거래상대방	거래 계정과목	지급액(외화)	잔액(외화)	지급근거(사유)
<예시1>	수수료수익			로열티
<예시2>	용역매출			서비스 Fee

- 대상 : 거래상대방별 연간 발생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작성
- 용역 구분 : 로열티, 서비스Fee, 경영자문 등
- 지급근거 : 계약서명, 지급사유 등 기재

3-1. 기타 채권 내역

기타 채권 내역

거래상대방	거래 계정과목	발생액(외화)	지급액(외화)	잔액(외화)	비 고
<예시>	매입(-)				이전가격 사후조정

- 대상 : 거래상대방별 연간 발생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작성
- 기타 사유 : 이전가격 사후정산 등

3-2. 기타 채무 내역

기타 채무 내역

거래상대방	거래 계정과목	발생액(외화)	지급액(외화)	잔액(외화)	비 고
<예시>	매입(+)				이전가격 사후조정

- 대상 : 거래상대방별 연간 발생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작성
- 기타 사유 : 이전가격 사후정산 등

4. 외국인도 수출내역

외국인도 수출 내역

거래상대방 (수입자)	거 래 계정과목	수출액(외화)	적출국	목적국	특이사항
<예시>	상품매출				중계무역

○ 대상 : 거래상대방별 연간 발생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작성
(검사요원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5. 외국인수 수입내역

외국인도 수입 내역

거래상대방 (수입자)	거 래 계정과목	수출액(외화)	적출국	목적국	특이사항
<예시>	매입 (미착상품)				중계무역

○ 대상 : 거래상대방별 연간 발생액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거래처 전체에 대하여 거래 건별로 작성
(검사요원과 협의하에 조정 가능)

6. 해외 현지법인(영업소) 설치 현황

해외 현지법인(영업소 포함) 설치 현황

업체명	설립일	형태	소재지	출자금	대여금	운영자금	폐업일

○ 형태 : 현지법인 / 지점 / 사무소 중 택1

7. 해외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현황

해외 현지법인의 자(손)회사 현황

업체명	설립일	형태	소재지	출자금	대여금	운영자금	투자비율	폐업일

○ 해외현지법인이 투자한 자(손)회사 내역 점검

8. 무역외 지급 현황

무역외 지급내역 현황

거래상대방	송금일자	지급사유 (송금코드)	통화	송금액	지급사유

○ 대상 : 거래상대방 및 지급사유별 일정금액 이상

9. 무역외 영수 현황

무역외 영수내역 현황

거래상대방	영수일자	영수사유 (송금코드)	통화	영수액	영수사유

○ 대상 : 거래상대방 및 영수사유별 일정금액 이상

10. 외화 차입 현황

외화 차입 현황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금액	이율	만기일	사용용도	보증자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후잔액

○ 작성시점에서 존재하는 장·단기 시설자금, 일반외화대출(대환대출 포함) 등 국내외에서 외화로 차입한 모든 건을 기재(단, L/C, D/A 등 무역결제성 차입은 제외하고 순수한 자본거래만 기재)

11. 현지법인 현지금융 현황

현지법인 현지금융 현황

차입일자	차입처	차입금액	이율	만기일	사용용도	보증자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후잔액

○ 현지법인의 현지금융 현황을 기재(기재 요령은 외화차입과 동일)

12. 외화 차입 현황

외화 대출 및 보증 현황

대출/ 보증처	대출/ 보증일자	대출/보증 금액	이율	만기일	사용용도	상환일자	상환금액	상환후 잔액

- 외화대출 및 모든 보증(지급보증, 이행보증, 계약이행확약 등) 현황을 기재
- 현지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외화대출 뿐만아니라 결제대금 대지급 등 사실상의 대출 현황도 모두 기재

13. 외화계정 현황

외화계정 현황

예금종류	계좌번호	계좌주	은행	지점	사용용도	년말 잔액

- 본사가 관리하는 국내외 모든 외화계정 내역을 기재(예, 정기예금, 일반예금, 정기적금 등)

[별지 제5호서식]

검사준비 목록표

구 분	자 료 명	제출장소	제출기한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외국환거래 검사 연기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신청내용	1. 통보 받은 검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2. 검사연기 신청사유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제1항 ___호	
	3. 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 연기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 세 관 장 귀하</p>			
<p>※ 구비 서류 : 검사연기 신청 사유(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증명하는 자료</p> <p>1. 천재·지변 / 2.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p> <p>3. 검사대상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p> <p>4.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p> <p>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p>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 신청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신청내용	1. 검사장소로 신청하는 곳	• (명칭) • (주소)	
	2. 검사장소 신청 이유		
<p>「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장 외 장소에서의 외국환거래 검사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귀하</p>			

[별지 제8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 검사계획 변경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이 0000.00.00.자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변경 항목	변경전	변경후
검사 방법		
검사 대상 범위		
변경사유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	------	-----------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9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 연장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 아 래 -

당초전체검사기간	. . . ~ . . .
당초실지검사기간	. . . ~ . . .
연장실지검사기간	. . . ~ . . .
연장전체검사기간	. . . ~ . . .
연장사유	(근거)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제2항__호 (내용)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	------	-----------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0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 검사 중지 통지서**

1.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를 중지합니다.
2. 검사중지기간이 종료되거나, 검사중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검사 중지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재개하고 남은 검사기간 동안 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 아 래 -

당초검사기간	. . . ~ . . .
검사중지기간	. . . ~ . . .
연장사유	(근거)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제4항__호 (내용)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11호서식]

○ ○ 세 관

수신자
(경유)

제목 **외국환거래 검사 재개 통지서**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를 재개합니다.

- 아 래 -

당초검사기간	. . . ~ . . .
검사중지기간	. . . ~ . . .
검사재개일자	. . .
남은검사기간	. . . ~ . . .

끝.

○ ○ 세 관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000-000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00-000-0000 전송 000-000-0000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보관 동의서

검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아래 동의자는 OO세관 검사요원 O급 OOO으로부터 위 검사대상자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 관련으로 제출한 붙임 목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와 물품을 세관에 보관하는 이유를 설명 받았고,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 목록의 자료와 물품을 세관에 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붙임. 외국환거래 검사자료·물품 보관 목록.

년 월 일

동 의 자

-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동의자 인적사항 및 검사대상자 관계 입증 자료(신분증·명함) 첨부

[별지 제13호서식]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 물품 보관 목록			
연번	품명	수량	비고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 물품 보관증

검사 대상 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1. 귀사(귀하)에 대한 외국환거래의 검사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붙임 목록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물품을 외국환거래 검사기간 동안 우리세관에 보관합니다.
2. 보관하는 자료 중 귀사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물품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우리 세관에서 보관하는 자료에 대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사본을 요구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붙임.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보관 물품 목록.

년 월 일

- 소 속 : OO세관 OOOOO과
- 직 급 :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반환 확인서

검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1. 아래 인수자는 귀 세관에서 보관한 상기 검사대상자에 대한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중 붙임 목록의 자료 또는 물품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아울러, 붙임 목록의 자료 중 귀 세관에서 사본 보관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본을 세관에 보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붙임.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반환 물품 목록.

년 월 일

인 수 자

- 검사대상자와의 관계 :
- 주 소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 인수자 인적사항 및 검사대상자 관계 입증 자료(신분증·명함) 첨부

[별지 제16호서식]

외국환거래 검사자료 반환 물품 목록				
연번	품명	수량	사본 보관여부	비고

* 연번은 보관 물품 목록의 연번을 기재하고, 일부 반환시 비고에 남은 수량 표기

[별지 제17호서식]

검사일일보고서

결 재	검사반장	과 장

20 . . . ()요일

<u>검사대상 업무</u>	
<u>검사한 사항(구체적으로)</u>	
<u>검사 결과 적발사항 또는 문제제기 사항</u>	
검사자	
비 고	

[별지 제18호서식] 삭제